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1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윤종오
정혜경 · 용혜인 · 김 윤
고민정 · 이기현 · 신장식
김재원 · 조계원 · 이재강
최혁진 · 이주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

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정당에서 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제함(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 배제하는 혐오 선동 또는 혐오폭력을 유발하는 선동(이하 “인종 혐오표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의2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한 규제) ① 정당이 제37조제2항 단서에 위반하여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현수막이 전국에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당에 대하여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당이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자진하여 제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정당이 6개월 내에 다시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정당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현수막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3조, 「국민투표법」 제26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주민투표법」 제21조의 선거운동기간 또는 투표운동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헌행과 같음)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 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 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 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 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u>. 다만,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종, 피부 색,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 배제 하는 혐오 선동 또는 혐오폭력 을 유발하는 선동(이하 “인종 혐오표현”이라 한다)에 해당하 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u>

③ (생략)

<신설>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에 대한 규제) ① 정당이 제37조제2항 단서에 위반하여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현수막이 전국에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당에 대하여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당이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자진하여 제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정당이 6개월 내에 다시 인종 혐오표현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정당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현
수막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3
조, 「국민투표법」 제26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
8조 및 「주민투표법」 제21조
의 선거운동기간 또는 투표운
동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